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61호 발간 - 지원주택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		
상세문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상정 연구위원	☎044-287-8136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이혜선 대외홍보팀장	☎044-287-8345
	연구기획조정실	정지혜 행정원	☎044-287-8015
분 량	총 3매(표 1종 포함)		
배포일시	2026년 2월 25일(수)		
보도일시	즉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시설 중심에서 '지원주택 기반'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 우리나라 보호 대상 아동 중 신규 발생 아동의 약 48%는 시설로 보호조치돼
- 시설 중심 보호체계는 사생활·자기결정권·자립 준비에 한계가 있어
- 국제규범은 아동 최선의 이익 중심...가정 외 보호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가족이 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을 시설 배치보다 우선해
- 보호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와 자립을 연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에 기반한 보호서비스 도입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 글은 이상정, 조휘래, 임세희, 마한열. (2025).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Issue&Focus』 제461호 『지원주택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상정 연구위원이다.

□ 이상정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시설 중심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 특히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심대 후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기반 가정 외 보호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화 방안을 검토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치 유형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약 12년 동안 가정 외 보호(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약 48%가 시설로 보호조치되고 있으며, 11,569명의 보호 아동·청소년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장기 보호를 받고 있는 것(2023. 12. 기준)으로 확인됐다.

□ 이상정 연구위원은 “시설 중심의 가정 외 보호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의 부족,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경험의 부족 등 아동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보호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십대 후반의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이에 이상정 연구위원은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기반 보호가 지역사회, 원가정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 <p>* 지원주택: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나 임시거주 성격의 중간주택과 달리, 위기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주거 형태.</p> <p>- 시설 보호가 단체생활 중심의 대규모 합숙 형태라면, 지원주택은 영구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기반으로 독립 거주를 전제로 하되, 일부 주택은 중간주택으로도 제공 가능.</p> |
|---|

〈표 1〉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시설과 지원주택

구분	시설	중간주택	지원주택
형태	단체생활 시설	임시 거주 주택	영구 거주 주택 (일부 주택은 중간주택으로 제공 가능)
특징	대규모 합숙	소규모 합숙, 서비스	독립 거주, 서비스
입주 계약	운영기관이 시설 확보	운영기관과 주택 공급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와 주택 공급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독립생활성	독립생활(X), 자율적 선택권(X)	독립생활(X, △), 자율적 선택권(△)	독립생활(O), 자율적 선택권(O)

자료: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연구', 이상정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6.

□ 이상정 연구위원은 “지원주택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진입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지원주택기반 가정 외 보호서비스가 시설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연속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장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원주택을 주거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기보다 아동보호정책의 범주 안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체계로서 지원주택을 명시하고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또한 “지원주택 기반 가정 외 보호는 시설 밖의 보호를 실현하되, 기존의 보호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이슈엔포커스 제461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6>